

#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6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0.

제안자 : 이우재 의원외 2인

## 1. 제안이유

- 계룡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## 2. 주요골자

- 의정활동비 지급(안 제2조), 회기수당 지급(안 제3조), 여비지급 (안 제4조) 등을 규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.

#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의정활동비 지급)** ①의원에게는 의정자료 수집·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월 550,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3조 (회기수당 지급)** ①회기수당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 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한다.

**제4조 (여비지급)**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

③의원의 국내·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회기수당 지급기준표(제3조관련)

지급기준	회기수당
의원 1인	일 70,000원

[별표 2]

###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4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인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 장 부의장	1 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46,000	25,000
의 원	2 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25,000	18,000

비고 :

- 의회소재지내에서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-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·하가 요금률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-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3]

##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(제4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항 공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 박 비 (1야당)	식 비 (1야당)	준 비 금		
		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1 등 정액	35	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	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	140	170	195
의 원	2 등 정액	20	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	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	130	155	180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 : 동경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
나. 나등급

- (1) 아시아주 · 대양주 :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
- (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크리스티네비츠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- (3) 유럽주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크, 프랑스, 페네드, 헝가리
- (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코트디브와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(1) 아시아주 · 대양주 : 뉴질랜드, 마샬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
- (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- (3) 유럽주 : 그리스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유고슬라비아,

포르투갈, 폴란드
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모리시어스, 모잠비크,  
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프린시페,  
시에라리온, 요르단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 
카메룬, 카타르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 
캄보디아, 피지  
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쿠아도르,  
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  
(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  
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나,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 
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모리타니아,  
세네갈, 소말리아, 스와질랜드, 알제리, 예멘, 이디오피아, 이라크, 잠비아,  
짐바브웨, 튜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 
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